
유네스코 중앙아시아학 연구소

해외인턴십 결과보고

I. 해외인턴 개요

1. 해외인턴의 목적

- 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 특화 전문인재양성 사업단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유네스코 중앙아시아학 연구소(IICAS)와 MOU를 체결, 국제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각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인턴을 파견하였다.

2. 인턴기간

- 1) 김태원(지식재산권법) - 2014. 08. 29(금) ~ 09. 27(토) 26박 28일
- 2) 방제일(기초법) - 2014. 09. 12(금) ~ 09. 27(토) 14박 16일

II. 우즈베키스탄 및 IICAS

1. 우즈베키스탄 국가 소개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로서 19세기 후반 제정러시아의 속국이 되었다. 1924년 10월 소비에트 연합의 일국으로써 우즈베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수립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1년 9월 완전 독립하여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을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쪽으로 큰 키

르키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25개 민족이 현재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명의 유래는 우즈베크(Uzbek)민족의 땅(stan이라는 용어는 땅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페르시아어)이라는 의미이며, 현재 수도는 타쉬켄트(Tashkent)이다. 언어로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면적은 447,400km²로 세계 57위이며, 인구는 2천 9백만 정도이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전체 국민의 88%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주요 교두보였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위치



2. IIC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소개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이하 “IICAS”)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 연구를 통해 일대 국가와 학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5년 창설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연구소로서 주로 실크로드 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표면적으로는 학술연구와 학술회의의 조직, 학술물의 출판 등이 주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IICAS의 주요 목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고고인류학자를 비롯하여 민속학자, 박물관 전문가, 법률가 및 지역 공동체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IICAS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Samarkand)에 위치하고 있다.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마라칸다로 알려졌고, 중국에서는 남북조

(南北朝)시대부터 당(唐) 시대에 걸쳐서는 강국(康國)이라고 불렸다. 1220년 칭기즈칸에 의해 패망되기까지 실크로드(Silk Road)의 교육기지로 번창하였으며, 14세기에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되었고, 그 후 우즈베크인의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1868년 러시아령이 되었으며 그 이후 1990년 독립하였다.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요충지로서 동·서양의 모든 문화가 녹아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한 사마르칸트는 IICAS의 실크로드 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IICAS의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중국·이란·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파키스탄·타지키스탄·터키 등 1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인도·러시아 등 3개국이 잠정 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그림 2 > IICAS 공식 로고



Ⅲ. 무형문화유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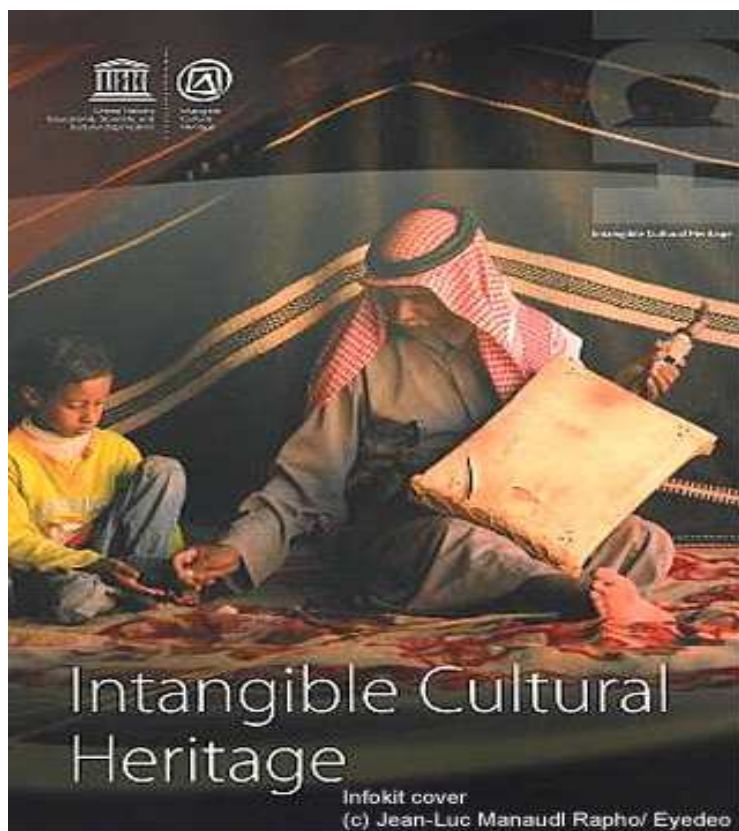
1. 무형문화유산과 유네스코

-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최근 수십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부분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제정해온 국제규약에 기인한다. 문화유산은 수집해놓은 기념물이나 유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전 전통(Oral Traditions),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s), 의례(Rituals), 축제 행사(Festive Event),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그리고 전통 공예 기술(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traditional crafts) 등 선조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전통이나 살아 있는 표현물(living expressions)이 포함된다.

- 유네스코는 유엔(UN)조직 내에서 문화분야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단일 전문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자국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채택은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림 3>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2.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 훼손되기 쉬운 무형문화유산은 가속되고 있는 세계화의 영향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척도이다. 여러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 간 대화를 돕고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적 표현(manifestation)자체보다는 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다. 지식 전수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이나 주류 사회집단 모두에게 필요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성과 현대성

-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여하는 오늘날의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문화적 관습을 나타낸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과 비슷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공유한다. 이웃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든 지구 반대편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서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시킨 것이든 모두가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환경에 적응해 거듭 변환 것이며 우리가 정체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는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현재를 매개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관습(practice)이 특정 문화에만 해당되는 공유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면서 개인이 하나 또는 여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도록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4.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성과 공동체성

- 무형문화유산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배타성이나 예외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적 재화(cultural good)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생겨난 것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미래 세대, 혹은 다른 공동체로 전수되는 지식,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의 보유자에 의해 좌우된다.
-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을 창조하고, 유지·전수하는 공동체나 집단 혹은 개인이 인정할

때에만 유산으로 인식된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특정 표현물이나 관습을 이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없다.

5. 살아있는 유산의 보호

- 보통의 문화처럼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한 새로운 세대에 의해 풍부해지는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상당수가 세계화, 문화적 동질화, 지원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멸되거나 과거에만 존재했던 관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는 일은 유산의 변화와 적응을 허용하면서도 전승을 강화하여 유산이 살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자연 공간을 보존하는 것과는 차별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형의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정 문화와 관련이 있어야하며 공동체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연행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全)세계 모든 곳에서 전통과 관습을 실연하는 공동체나 집단들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자신들만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보통 문자화된 텍스트보다는 구전(口傳)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보호 활동에는 항상 유산을 보유한 공동체나 집단, 개인이 참여해야 하난.
- 무형문화유산의 일부 유산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소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문화의 일부인 무형문화유산이 과거의 것으로만 박제되거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면서 보호·관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식과 기술, 의미를 전수하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보호는 무용 공연이나 노래, 악기 공예품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소통과 관련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이 오늘 세대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 내일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수단은 무형문화유산의 생존 능력(viability), 지속적인 재창조,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는 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증진, 특히 형식·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가 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관광처럼 수입 창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활동이 살아있는 유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진작시키고 경제정책 수립 시 무형문화유산 문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6. 협약의 국제적 공인

- 문화다양성의 추진동력인 무형문화유산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국제협력의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국제법 체제에서 국가에 의해 발효되는 규약으로써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 협약은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국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가운데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총회를 통해 24개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고 정부간 위원회는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위원회는 무형유산이 협약 목록 등재 여부와 구매품 지원, 모범, 보호 사례 보급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등재와 관련해 협약은 해당 무형유산이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종목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이나 ‘인류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등재된다. 가장 중요한 목록인 긴급보호목록은 생존력, 즉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이 위협 받는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것은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를 장려하여 전 세계 문화다양성과 이눌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활동 목록을 발간·배포한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보급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협약 당사국 정부가 신청할 수 있지

만 신청 시 관련 공동체나 집단의 전적인 참여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2)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3)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 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4) 무형문화유산 상징 도안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형유산 상징도안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상징도안 국제 공모전이 개최되었으며, 알제리, 볼리비아, 불가리아, 프랑스, 인도, 나이지리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 유네스코는 모든 회원국 내 전문/아마추어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및 무형문화유산 관련자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 결과, 크로아티아의 드라구틴 다도 코바체비치(Dragutin Dado Kovacevic)가 제출한 작품이 최종선정 되었다. 이 도안은 형태가 없는 "무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 사각형, 원이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상징 도안



- 이 상징도안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징도안에 대한 세부 사용지침은 2010년 6월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 지침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상징도안 사용지침 전문은 [붙임 1] 참조.

7) 무형문화유산 협약

-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유네스코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무형유산 보호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국제사회는 문화 유산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과 권고문을 채택해왔다.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지만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각국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1994년에는 인간문화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문화 보유자 및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규범이었다. 따라서,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은 새로운 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협약이 채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 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열한 번째로 가입하였다.

<표 1> 무형문화유산 협약 주요경과

연도	주요경과
1966	유네스코 총회, 국제 문화협력 원칙 선언 채택(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73	볼리비아, 민속 보호를 위해 국제 저작권 협약 강화 제안
1982	세계문화정책회의(The Mondiacult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멕시코 시티),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및 문화유산의 새로운 정의에 포함
1989	유네스코총회,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UNESCO